

제15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08. 9. 4(목)

조례안 검토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종진]

<의안번호 제2008 - 35호>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8년 8월 21일
- 나. 제출자 : 거창군수(재난관리과장)
- 다. 회부일자 : 2008년 8월 25일

II.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2005. 8. 4.)됨에 따라 인용하는 법령명칭을 변경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

III. 주요내용

- 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법률 변경(안 제9조, 제13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내용을 변경(안 제10조제4항)
 - 위원 구성인원 변경: 15명 → 12명
 - 실과장 중 임명 → 실과단사업소장 2/3임명, 민간전문가 위촉 1/3
 - 위촉직 임기조항 신설

다. 위원회의 심의사항 내용 추가(안 제11조)

-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라. 정기회의 개최횟수를 연1회에서 연2회로 변경(안 제12조)

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순화

(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 ~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 → 퍼센트, 이내 → 내, 기타 → 그 밖에, 당해 → 해당, 0인 → 0명

IV.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2005. 1. 15 제정된 조례로, 그간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관리 운용되어오다 2005. 8.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별도 제정됨에 따라 인용하는 법령의 명칭을 변경하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률 변경과(안 제9조, 안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 구성인원을 15명에서 12명으로 축소 조정하고, 민간전문가 위원 정수를 1/3 이상으로 명시하였으며(안 제10조제4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7조 규정사항임), 안 제11조 중 위원회 심의사항에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을 추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규정사항임)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05. 8. 4. 제정되었음에도 조례 개정이 늦어진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 그 밖에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 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V.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3조, 제14조
-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08. 6. 11. ~ 6. 30.)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규제사항 없음

관 계 법 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6>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 (기금의 설치제한) ①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신설의 타당성 심사를 위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금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의 성과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

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점검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